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79
----------	-------

발의연월일 : 2018. 7. 18.

발의자 : 한정애 · 김병기 · 신경민

진선미 · 김성수 · 윤후덕

심재권 · 고용진 · 유승희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화학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u>화학사고</u>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u>화학</u> <u>사고</u> ----- -----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u>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u>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